시보

선	기관의 장
신	
람	

all ways INCHEON

제2180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320호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23-347호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8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23-348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23-348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공시송달공고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115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0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공보담당관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320호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제목	: .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고지서	공시송	;딜
--	--	------	-----	------	-----	---	-----	-------	-----	----

□ 공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6. (15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부과내용		
대상자	재산소재지	점유면적	점유기간	변상금및연체료	비고
사단법인					
한국학부모안전협회	인천 미추홀구	120호	2023.2.23.~	000 07091	
인천시 남동구 장승로 **	매소 <u>홀</u> 로 618	89.77 m²	2023.4.14.(51일)	803,670원	
(대표자 고**)					

□ 내용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인천시청 체육진흥과에 방문하시어 부과고지서를 교부받아 기한 내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연 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팀(☎ 032-440-4324)

2023년 10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329호

2023년도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변경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 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한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변경 공고하오니 택시운송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10. 24

인천광역시장

□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사업예산	1,500백만원	2,100백만원	600백만원 증액
지원규모	1,000대	1,400대	400대 추가지원

□ **지원조건** ※ 배기량(cc) 무관

- 1. 인천광역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인천시 택시운송사업자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한 택시
- 차령이 일반택시 2년 이상, 개인택시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거나,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대·폐차하는 택시
- 2. 지원조건 제1의 기준을 충족하여, 대·폐차로 기존 차량 등록 말소 후 2023년 이내 신차 택시 등록 완료

□ 지원규모 : 1,400대(개인택시 882대, 일반택시 518대)
□ 사업기간 : 2023. 2월~1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직접 방문 접수
□ 보조금 지원: 1대당 1,500천원
※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을 통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지원 절차
사업 공고 1. 신청서 접수 (1차 검토) 신청서 취합 후 제출 인천광역시 운송사업자 → 조합 조합 → 시
보조금 대상자 결정 통보 ○ 2. 신규등록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시 → 조합 ○<

□ 제출서류

- 1.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보조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가.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 나. 차량등록증 사본(기존차량)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
- 라.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가능)
-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된 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2.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가. 신규등록증 사본
- 나. 통장 사본
- 다.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 라. 신규 등록차량 사진

□ 보조금 지급

인천광역시는 조합으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면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 후 익월 까지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 직접 지급

[참고]「별지 제1호 서식」

확인]번호	노후	택시 대·폐차 ㅂ	용 보조사업	신청시	1
	<u>^</u>	성 명 (회사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_ 소·	유자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개인	., 일반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대	상	자동차제원	□ 등록일자(차령)	년 월 약]	
자.	자동차 <u>비기량(</u>)CC					
차명 및 형식 /						
2	위와 같이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다. 일
인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구 비 서 류	비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등 2.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막소사실증명서 없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참고] 「별지 제2호서식」

확인번호	노후택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보조금 지급청구서						
	성 명 (회사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개인, 일반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11111	자동차제원	□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신규등록 자 동 차	70 7 11 12	□ 배기량()CC					
	차명 및 형식							
	보조금신청금액	<u> </u>	9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500%)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대·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신규등록증 사본
- 2. 통장사본
- 3.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 4. 신규등록차량 사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 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등
- ◈ (수집·이용목적) 대·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중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23-3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1. 제 목: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2. 공고기간:** 2023. 10. 24. ~ 2023. 11. 7.(14일간)
- 3. 통지내용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과태료 중가산금 부과(60개월)
- 과태료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조치 될 수 있음

4. (송달)대상자

대상자	과태료본세 (①)	가산금 (②)	체납총액 (①+②)	부과일자	반송사유
서0애	307,460	12,900	320,360	2023. 10. 10.	폐문부재

5. 기타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032-453-7206)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기간 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 10. 2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23-3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제 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2. 공고기간:** 2023. 10. 24. ~ 2023. 11. 7.(14일간)
- 3. 통지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련 과태료 중가산금 부과(60개월)
- 과태료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조치 될 수 있음

4. (송달)대상자

대상자	과태료본세 (①)	가산금 (②)	체납총액 (①+②)	최초부과일자	반송사유
신0일	3,000,000	702,000	3,702,000	2023. 10. 10.	폐문부재
최0범	250,000	7,500	257,500	2023. 10. 10.	폐문부재

5. 기타문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032-453-7206)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기간 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 10. 2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115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3년 10월 2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2023. 6. 13. 시행)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2023. 8. 1.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을 위한 변경사항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는 가산점 등의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요건 확대(안 제11조제2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신설함 나.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11조제3항)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및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함.

- 다.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추가(안 제17조제4항)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대를 위해 위촉 제한을 추가함.
- 라.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채시험 점검 의무화 신설 (안 제20조의2)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함.
- 마.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서 가산점 규정을 폐지함.(안 제39조, 안 별표23) 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근무경력 가산점 기준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함.(안 제39조의2, 안 별표24)
- 사.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을 정비함.(안 제39조의3, 안 별표25)
- 아.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5 제가호)
-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추가함.
-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안 별표8 비고 1, 별표9 제2호 비고 5)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별표8, 별표9 제2호에서 정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을 준수하야 하는데, 이를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인사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사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층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 032-440-2532, FAX : 032-440-86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11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7조제4항 전단 중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을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 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 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 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39조제1항 중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22와 같고, 언어 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가산점은 별표 23과 같다."를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22와 같다."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실적 가산점은 3점 범위에서"를 "실적 가산점은 2.4점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별표 5 제가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녹지	산림자원	기 술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산림 기 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기 사: 조경, 자연생대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산업기사: 조경, 자연생대복원, 산림, 식물보호기 능 사: 조경,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별표 8 비고 제1호 단서 중 "3년의 범위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9 제2호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에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23을 삭제한다.

별표 24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제39조의2제1항 관련)

부여 기준	가산점	비고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1년 이상 근무한 5급 이하 공무원 (단, 대규모 재난 대응·복구 전담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부터 부여)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직위 지정 1년 경과후 지정일부터 1개월마다 0.01점	최대 0.5점

* 재난·안전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풍수해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5, 별표 24,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별표 23, 별표 25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23, 별표 2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5]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및 가산점(제39조의3제1항 관련)

항목	부여대상		가산점	부여기준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지표 (목표달성) 유공 공무원		0.4점 이내	- 국정시책합동평가 결과 실적가산점 신청자 (대외평가 목표 달성시 총괄 팀장, 담당자 포함 가능)
주요정책혁신 업무성과평가	우수지표 (목표달성) 유공 공무원		0.4점 이내	- 평가담당관실 평가결과 실적가산점 신청자(총괄담당 제외)
공약이행 평가관리 공기업경영 평가관리	대외평가 목표 달성 시 공약, 공기업경영평가 총괄팀장 및 담당자		0.4점 이내	- 외부평가 결과 확인 후 평기담당관실 신청(총괄담당 포함 가능) 외부평가 목표 설정시 평가담당관실 협의
기피, 현안 업무	기피, 현안업무 담당자		0.2점 이내	 기피업무: 정상추진 시 100% 현안업무 (기본점수) 0.1점 (추가) 목표달성도에 따라 0.1점
	분야별 성과 우수자	예산절감 지주재원확충 국비확보 새로운 업무 개선·발굴분야	탁월 1.0점 이내 우수 0.8점 이내	- 1년(전년도) 단위 성과평가 - 행정·전산·토목·건축직 1인 성과는 배점의 50%이내 부여 - 기타 직렬(직류)의 1인 성과는 0.5점 이내 부여 - 공동성과는 기여율에 따라 산정
특수성과	우수제안실행		(채택제안 등급별) 금 상 0.5점 이내 은 상 0.4점 이내 동 상 0.3점 이내 장려상 0.2점 이내	- 채택제안 실행과 제안심사위원회 실행실적 검증 후 창안자·실행자 특별승진, 특별승급 제외 시 부여 - 창안·실행 공동성과는 기여율에 따라 산정 - 인사상 인센티브 중 실적가산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적극행정위원회 선발)		0.4점 이내	신청 공무원 - 공동성과 기여율에 따라 산정

※ 실적가산점 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	제11조(응시수수료) ①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②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③
접수 당시 <u>「국민기초생활 보장</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	<u>해당하는</u>
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u>따른 지원대상자인</u> 사람에 대해서	
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u> <신 설></u>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u><신 설></u>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2180호 인 천 광 의	취시보 2023. 10. 24.(화요일)
<u><신 설></u>	<u>지원 대상자</u>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7조(시험위원) ① ~ ③(생 략)	제17조(시험위원)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 (친·인척, 근무경험관계, 사제지 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신청절차를 안 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 인척, 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 인 관계(시험 실시기관의 장, 시 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가 없는,
<u> </u>	제20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 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 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 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

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 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 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 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 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 서 제외할 수 있다.
-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

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 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 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 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 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39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제39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 은 별표 22와 같고, 언어능력검 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가산 점은 별표 23과 같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 항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항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 지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 은 별표 22와 같다.

제39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제39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② <삭 제> 따른 가산점은 총 0.75점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산점은 총 1.2 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제39조의3(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 제39조의3(실적 가산점) ①---칙 제25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은 3점 범위에서 부 여할 수 있고. 가산점의 부여 기 준 및 가산점은 별표 25와 같다.

------2.4점-----

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실적가산 ② <삭 제> 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할 때에는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 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 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 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 2. 도서 · 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4.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 ⑧ <생 략>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4조(응시수수료)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 1.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은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 인지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 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 ④ (생 략)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① (삭 제)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 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
- ② 삭제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 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
-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 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
-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
-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
-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⑤ ~ ⑥ 삭제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1. 도서 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 ② ~ ③ <삭제>
-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 2.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 ⑤ 삭제
-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 ⑦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 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 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변경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 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3. 12. 12.>
 -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이상
 - 2. 6급·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 최근 2년 이상
 - 3. 8급 이하 공무원 : 최근 1년 이상
-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평정 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 단위기간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 ⑥ 삭제
- ⑦~⑧(생략)
-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

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 3. 8급 ·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 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 (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 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할 수 있다.

-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 14 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 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2.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나무의사 자격

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응시자격
- 2. 시험의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 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 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 5.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③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 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④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 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 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